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1
----------	-----

2020. 1. 21.(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1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월 7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월 17일

-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용 의원)

가. 제안사유

-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 등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학생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학생 중

현 행	개 정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2020년 1월 현재 강원, 전남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중임.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조례 제정 후 2년('11~'12)동안 시행되었다가 지원대상자 감소추세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사유로 2013년부터는 중단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 도 내 시민사회 단체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지원을 다시 시작하였음.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재개 이후,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획인원 대비 지원 신청자의 부족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구직활동 및 부채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개정안이 제출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3호는,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용어 정의의 개정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본 조항에서, “<현행>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개정안>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변경한 것은 그 의미상 차이는 없으며 문구의 경제성 측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 -----.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 2018년 사업재개 이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당초 계획 인원의 23%(‘18)에 그쳐 사업 대상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또한 이자지원사업이 도비 40%, 시·군비 60%로 지원되는 관계로 시·군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내 11개 시·군 중 과반수를 넘는 8개 시·군이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2년 이내)까지의 확대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3개 시군은 현행유지 선호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실적

- 2018년 계획 대비 실적: **22.2%** (계획 인원: 6,400명, **실적: 1,419명**)
- 2019년 계획 대비 실적: **21.8%** (계획 인원: 6,400명, **실적: 1,398명**) ;10.31기준

- 본 개정안에 따른 충북도의 대상 범위는 현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졸업후 5년), 경기(졸업후 5년), 제주(졸업 후 10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확대된 것임.
- 다만, 비용 추계에서는 재학생의 경우 2018년 기준 계획 대비 실적이 2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의 23%를, 졸업생의 경우 10% 수준에서 예산추계에 반영했는데, 현 추계 수준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요구되며,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늘어날 경우,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용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대출잔액 (A)	실지원대상 (B)	연간 발생이자 (C=B×2.2%)	연간 소요예산			도비 (F×40%)	시군비 (F×40%)
				재학생* (D=C×23%)	졸업생** (E=D×10%)	계 (F=D+E)		
예산	34,135,805	21,129,101	750,987	170,200	17,000	187,200	74,880	112,320
인원	10,118명	7,358명		1,692명	169명	1,862명		

* 재학생 : '19년 실지원대상자 × 약 23% 적용 → **1,692명, 약 1억7천,**

** 졸업생 : 지원 재학생 기준 10% 정도 예산추계 반영 → **169명, 약 1천7백**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구직활동과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시도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현황 (2019. 12. 기준)

(단위 : 백만원)

시도	자격기준			'18 실적		'19 예산	소득기준	비고
	거주제한	대학 소재지	지원자격	인원(명)	예산			
서울	본인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졸업생(졸업후5년)	17,910	1,512	1,731	8분위 (기초생활수급권 자, 다자녀 제한없음)	
부산	제한없음	부산	재학, 휴학생	4,103	275	440	8분위	
대구	본인 또는 직계존속 거주	대구,경북	재학, 휴학생 졸업자(17~18년도)	2,832	305	350	8분위 (다자녀 제한없음)	
인천	본인, 부모 거주 (1년이상)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미취업자(졸업후 2년)	-	-	172	8분위 (다자녀 제한없음)	사업재개 (‘19)
광주	본인 거주	광주	재학, 휴학생, 대학원생	1,636	122	180	제한없음	
대전	본인 거주	대전	재학, 휴학생	1,602	207	270	제한없음	
	직계존속 1년이상 거주	대전 외						
울산	본인 거주	울산	재학, 휴학생	236	9	20	8분위	
세종	본인, 부모 1년 이상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236	12	20	제한없음	인재육성 재단
경기	부모 또는 직계존속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대학원생 미취업자(대학졸업후 5년, 대학원졸업후 2년)	17,024	979	2,523	제한없음	
충북	본인, 직계존속 1년이상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1,419	60*	380	8분위	인재양성 재단
충남	본인 거주	충남	재학, 휴학생	206	298	350	8분위	상환액 지원
전북	시군별추진	전북	시군별 상이	-	-	88	-	-
경북	본인, 직계존속 1년이상 거주	대구,경북	재학, 휴학생	1,200	123	100	8분위 (다자녀 무제한)	
경남	본인 거주	경남	재학, 휴학생	1,021	104	105	8분위 (다자녀 무제한)	
제주	본인 거주, 제주소재 고교졸업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대학원생 미취업자(졸업후10년)	2,416	227	300	제한없음	

* 이자지원 내역 : 총지출 120,682천원(이자지원 60,780 / 운영비 : 36,902 / 위탁대행수수료 : 23,000)

※ 강원, 전남 미시행 / ※ 충남(상환액 지원, 1인 150만원까지 / 200명)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	-----

발의연월일 : 2020년 1월 6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최경천,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1. 제안이유

-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 등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학생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학생 중

현 행	개 정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99호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를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 ---- <u>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u> ----- ----- -----.

관계법령 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충청북도 대학생 및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의 대출이자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학자금대출 지원) :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8분위 이하 가구소득분위 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상 기준 확대·시행할 계획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실지원대상 (A=무이자제외)	연간 발생이자 (B=A×2.2%)	연간 소요예산			도비 (E×40%)	시군비 (E×60%)
			재학생* (C=B×23%)	졸업생** (D=C×10%)	계 (E=C+D)		
예산	21,129,101	750,987	170,200	17,000	187,200	74,880	112,320
인원	7,358명	-	1,692명	169명	1,862명	-	-

* 재학생 : '19년 실지원액 및 실지원대상 × 약 23% 적용 → **약 1억7천, 1692명**

** 졸업생 : 지원 재학생 기준 10% 정도 예산추계 반영 → **약 1천7백, 169명**

나. 추계 결과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요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공동부담 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2020년도 188백만원, 2021년 188백만원, 2022년 188백만원, 2023년 188백만원, 2024년 18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단위 : 백만원)

예산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36	187.2	187.2	187.2	187.2	187.2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40%), 시군비(6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87,200	187,200	187,200	187,200	187,200	936,000
도 비		74,880	74,880	74,880	74,880	74,880	374,400
시군비		112,320	112,320	112,320	112,320	112,320	561,600
세 출		187,200	187,200	187,200	187,200	187,200	936,000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87,200	187,200	187,200	187,200	187,200	936,000
재원 조달		187,200	187,200	187,200	187,200	187,200	93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4,880	74,880	74,880	74,880	74,880	374,4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112,320	112,320	112,320	112,320	112,320	561,600
기 타 (민간 자부담)							